

월남전과 국가주도 외자조달체계 구축 과정 :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과 월남특수 본국송금을 중심으로*

전 경 진**

국문초록

본고는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월남의 금융환경과 외국환송금 경로를 분석하여 월남에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이 월남특수로 발생한 외화조달과 외화소득의 통제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본다. 1960년대 월남전 파병에 따른 월남특수는 한국경제발전 초창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준 중요한 외화 조달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월남파병의 반대급부로 획득한 군납사업권을 기반으로 인력송출과 국가적 차원의 대월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수입을 도모하고 이를 극대화하여 산업자본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주월한국군과 월남진출 한국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는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의 전신이었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을 1966년에 개설하였고, 이 국책은행 해외지점을 정부 대리인으로 삼아 주월한국군의 해외군무수당을 관리하고 대사관을 동원해 월남진출 한국기업과 파월노동자의 외화소득을 국외취업허가와 결부시켜 감독함으로써 월남에서 획득한 외화가 현지에서 누락

*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개최한 2022년 제1회 서강동연 학문후속세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심사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강희정, 이한우, 김종호, 현시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박사과정, jeonkj@sogang.ac.kr

되지 않고 본국으로 최대한 송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월남특수, 해외근무수당, 본국송금, 외환은행, 월남전, 해외송금

I. 서론

1960년대 중반 월남전 파병과 군납기업 및 기술자 파월은 한국경제발전 초창기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중요한 재원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파월장병 및 파월기술자, 파독광부, 재일교포의 본국송금은 무역외 수지에서 연평균 15% 이상 차지하고 있었고, 상품수출액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인력송출에 따른 본국송금은 외화조달의 중요한 원천이었다(김수용 1983).

특히 월남¹⁾은 파월기술자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군납사업, 대규모 장병파병으로 인해 주요한 외화조달처였다. 10억 달러라는 월남특수에서 군납은 46%, 파월장병 가족송금과 근로자 임금송금은 3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외화조달 재원이었고, 정부는 이들이 획득한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시키기 위해 사이공에 한국은행 지점을 설치하였을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었다(주익중 2018). 이렇게 월남에서 보낸 송금으로 발생한 월남특수와 대기업 형성에 대해 경제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김수용 1983; 백광기 2004; 윤충로 2008; 주익중 2018; 조재호 2011), 이 월

1) 사전적 의미로서 월남은 베트남 전체를 지칭하나, 당시 문헌 및 자료에서 국교가 없었던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은 북월(北越)로 지칭하고 편의상 남베트남으로 지칭되는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ROV)만을 월남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료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베트남공화국을 월남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남특수를 만들어낸 외화가 월남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경로와 유입된 외화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통제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8)이 파월기술자의 급여 본국송금 지급절차에 대해, 최용호(2006)가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신청, 지급·결산절차 및 송금현황에 대해, 권혁은(2016)이 파월장병 및 현지전역 파월근로자의 임금과 송금, 저축수준에 대해 다뤘지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연구는 월남 현지의 외국환규정 완화 이전 시기로 한정되었고, 최용호와 권혁은의 연구에서는 월남에서 획득한 외화가 한국으로 송금되는 과정과 그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월남특수를 가능하게 했던 당시의 금융제도와 송금환경은 여전히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부 자료와 언론 보도, 당시 금융권에서 사용하던 실무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 설립과 활동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정부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영구문서로 주로 월남파병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해외취업송출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재정·금융정책 주무부처인 재무부에서 생산된 품의문과 대외기관 발송공한, 이에 첨부된 부속자료로 구성된다.²⁾ 이와 더불어 교차검증을 위해 당시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참고한 정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장과 실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처리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시 한국외환은행 및 기타 외국환은행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한 외국환업무 처리지침 및 한국은행·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수급하는 데 해외로 송출된 인력과 파월장병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무역외수입이 얼마나 중요했고, 정부가 이

2)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외국부·재외지점 시기와 한국외환은행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한국(외환)은행으로 표기하고자 하며, 이외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를 어떻게 촉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냉전시대 중 동남아시아에서 자본진영과 공산진영의 충돌로 발생한 월남전이라는 소용돌이에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환경에서 외화를 월남에서 공수하였는지, 그리고 한국(외환)은행 사이 공지점 설치와 한국외환은행 분리 사례를 통해 월남특수에서 수입한 외화를 금융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진행된 외국환전문 국책은행 설립과 결부하여 어떻게 외화를 통제하고 관리했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경제성장 초반기 당시 설립된 한국외환은행의 역할 역시 외화조달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금융체계와 제도 역시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내·외자 확보에 초점을 맞췄던 당시의 사회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의 금융제도 구성에 어떠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II. 1960년대 초·중반 해외인력송출과 본국송금

1. 1960년대 초반 외국환정책과 외화수급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했다는 것이다(박진근 2009: 107). 이러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당초부터 자본을 수출진흥과 산업화를 통한 확보계획을 구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당초 박정희 정권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어진 냉전과 이에 따른 미국의 원조정책에 의존하고자 했던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와 달리,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자조(Self-help)’를 통

한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이는 ‘수출을 통한 외자획득 내자 동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및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김보현 2019: 331-332). 그러나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게 조세를 통한 산업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조세 인상은 집권정당성이 약한 박정희 정권이 대중의 조세저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자충수에 가까운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장악하여 시중 자금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김정렴 2006: 113-131).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 말 ‘은행주 불하’(銀行株拂下)를 통해 민간에 불하된 시중은행에 대하여 법률 제626호와 법률 제623호를 통해 민간소유 은행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지분을 정부로 재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설립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기업 정책자금 창구를 열고, 회색지대에서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고금리 부금을 취급하던 무진회사를 정책적으로 일괄 통합 후 국책은행화하여 국민은행을 설립했다. 전술한 중소기업은행이 舊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점포를 인수하여 출범했다면, 나머지 비도시지역 점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인계되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즉, 시중은행과는 별개로 분야별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담하게 하기 위한 국책 특수은행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이들 국책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내자동원에 필요한 국책은행체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수출을 통한 외자유입 및 외국환업무 전문 국책은행의 설립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당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을 모체로 출범하였으나, 미군정시기 설립되어 38선 이남지역 외국환업무를 독점하던 조선환금은행(Korean Foreign Exchange Bank)을 흡수하며 갑류 외국환업무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 갑류 외국환업무를 신설되는 외국

환전문 국책은행으로 이관시키고, 을류 대내외국환업무만 취급하던 기존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갑류 외국환업무를 인가하여 국제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1960년대 전반기 당시 한국의 외국환정책은 한국은행 외국부의 갑류외국환업무 독점취급과 외화매상집중제로 대표된다. 1961년 시행된 외화매상집중제는 국적자 및 내국기업이 취득한 외화를 의무적으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외국환을 집중토록 하고, 비거주자, 항공사, 선박사, 보험사 등 관련 법규에서 열거된 대상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외화보유를 허용한 것이다(한국은행 2010: 364).

이에 따라 대외수출업자가 영업을 통해 획득한 외국환은 기존과 다르게 자기명의 외화계정에 예치하지 못하고 바로 외국환은행에 은행률에 따라 강제매각하도록 되었으며, 대신 외화공급제가 시행되어 수입을 목적으로 외화가 필요한 개인 및 기업 역시 외환증서가 없더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류상운 2017: 99-100)

그러나 1960년대 전반기의 외국환정책이 외자동원을 통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는 당시의 외환수지 불균형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환율을 단일화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 외자를 통한 수출주도공업화는 고정환율과 외화수급이 안정화된 1965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해졌다(주익중 2017: 184-185).

이와 더불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현실성없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편성된 결과, 계획보다 저조한 외자유치와 내자동원으로 사실상 실패한 계획이었다(조재호 2011; 김보현 2019). 따라서 외화수급을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강화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자금, 이와 더불어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부터 진

행된 월남전 파병은 무역외수지를 통한 대규모 외화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외화조달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다(조재호 2011: 136-138). 동시에 1960년대 당시 인력수출을 통한 교포 및 해외취업 기술자의 대본국송금 역시 주요한 외화유입원이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이들의 대본국송금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외화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보건사회부 1969). 실제 교포의 해외송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약 10년간 연평균 상품수출액의 11.97%, 무역외 수지의 15.95%를 차지했을 정도로 산업설비 투자로 인해 무역적자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외화 부족을 해결해주었던 중요한 외화조달처였다(김수용 1983: 47).

한국은행은 정례적으로 재외교포 및 파월기술자 송금에 관한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본국송금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1966년까지 본국송금의 주요 집단은 재일교포 및 파독광부였다. 재일교포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에 소재한 한국은행 재일지점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하였으며, 파독광부의 경우 한국은행의 서독소재 예치환거래은행인 드레스너 은행(Dresdner Bank)과의 협조를 통해 송금건을 주기가 일정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한국은행 1965; 1966). 또 다른 주요집단인 파월기술자 및 장병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사이공 현지에 점포를 신설하여 대본국송금 및 미군 군납 기업의 용역 및 무역활동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이 취득하는 외국환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한국은행 1966; 외무부 1969).

2. 해외송출인력 본국송금과 환거래은행 문제

(1) 해외송금과 한국인 주요 진출지역에서의 본국송금 경로

당시 해외송금은 주로 우편을 통한 지급지시서(MT, Mail Transfer)

송금이거나 송금환(DD, Demand Draft)을 발급받아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이었다. 1960년대 당시에도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은 사용되었으나, 현재 가장 선호되는 통신방식인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경우 1977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했고, 한국에 도입된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인 1992년 3월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전신전화국에서 취급하는 국제전보나 가입전신망 텔렉스를 이용해서 해외송금에 필요한 전신문을 발송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제통신시설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소액송금에 국제항공우편료에 비해 막대한 전신료를 부담할 수는 없었다.³⁾

1960년대 해외교포의 주된 송금처였던 서독에서도 한국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었던 드레스너 은행(Dresdner Bank, 현 Commerz Bank AG) 측에서도 우편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에서 2주간격으로 한국행 지급지시서를 모아서 발송하였는데, 이것이 송금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일정일 간격으로 송금서류를 발송하도록 하였다(한국은행 1966: 2).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된 서독에서 송출인력의 송금액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서독발 본국송금의 중요성이 인식되자 한국(외환)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드레스너 은행을 통해 처리되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송금업무는 1977년 한국은행 시절 설치되었던 한국외환은행 뒤셀도르프 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승격시키고, 승격된 환은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통해 직접 처리

3) 1966년 기준 30g 우편 한 통 기준 미국행 항공우편료는 223원, 월남행 항공우편료는 193원이었으나, 전신송금을 위해 국제전보를 이용하였을 경우 서신전보 22어 기준 미국행 전보는 통당 1,251원, 월남행 전보는 2,080원을 부담해야 했다. 요컨대 한국은행과 무예치환거래 관계에 있는 월남으로 송금해야할 경우 우편송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편료로 416원을 부담해야했으나, 전신송금을 이용해야할 경우에는 약 8배에 달하는 3,330원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체신부고시 제2412호; 제2413호; 제2415호; 체신부 1970: 436-454).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120-121; 한국의 환은행 1973).

재일교포가 거주하는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도쿄와 오사카에 한국은행 재일지점이 개설되어 있었고, 한국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 관계에 있던 퍼스트내셔널시티은행(FNCB,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도쿄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국행 송금을 안정적으로 취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남의 경우에는 본국송금 주요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획득한 외화를 본국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경로가 마련되지 않았다.⁴⁾ 당시 한국은행은 예치환거래계약을 주로 조선환금은행 시기 계약을 체결한 미국권 은행과 영국 바클리즈 은행(Barclays Bank)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체결하였다. 1959년 중화민국(대만)의 국책은행인 대만은행(Bank of Taiwan), 중앙신탁국(Central Trust of China)과 상호간 계정을 개설하면서 비영미권으로 예치환거래은행망을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영미권에 집중된 환거래은행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1>은 당시 1966년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개설 이전 월남공화국에 지점을 개설한 외국계은행 목록으로, 한국은행과 직접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월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한월 간 물품 수출입에 수반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한국은행과 이들 외국계은행의 본점이 동시에 거래하는 제3의 은행을 경유해야만 하는 이중 경유가 불가피했다.

4) 무엇보다 1966년 체이스맨하탄은행(CMB, Chase Manhattan Bank)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Bank of America)가 사이공에 지점을 개설할 때까지 한국은행 외국부와 예치환거래 관계가 있는 국제적 대규모 은행의 재일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Emery 1969: 8).

<표 1> 1966년 이전 월남진출 외국계은행 목록

번호	국적	은행명	월남 진출시기
1	중화민국	Bank of Communication (交通銀行)	1946년
2	중화민국	Bank of China (中國銀行)	1947년
3	태국	Bangkok Bank	1961년
4	일본	Bank of Tokyo (東京銀行)	1962년
5	영국령 홍콩	Bank of East Asia (東亞銀行)	1921년
6	영국령 홍콩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	1865년
7	영국	The Chartered Bank	1904년
8	프랑스	Banque Francaise Commerciale	1922년
9	프랑스	Banque Francaise de l'Asie	1955년
10	프랑스	Banque Nationale de Paris	1947년

출처: Embassy of Vietnam in United States (1971: 12-13)

(2) 예치환거래은행과 외화타점예치금

국경을 넘어 채권채무의 결제와 청산이 완료되는 외국환(外國換)은 국내에서의 송금, 내국환(內國換)처럼 하나의 중앙기관을 통해 채권채무가 결제되거나 청산되지 않고 송금은행(당발은행)과 수취은행(타발은행) 쌍방 외국환은행 간 '코레스'(Corres)라고 하는 환거래 계약(Corre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여 쌍방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자금을 결제한다. 환거래은행은 코레스계약에 따라 양 은행 내에서 자금결제를 위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환거래를 하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과 상호 간 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쌍방이 공동으로 거래하는 제3의 예치환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으로 양분된다(조흥은행 1972: 117; 한국금융연수원 1989: 86)

이때 예치환거래계약에서 당방은행이 선방은행에 개설한 계정을 당방계정(Our Account 혹은 Nostro Account), 선방은행이 당방은행에 개설한 계정을 선방계정(Their Account 혹은 Vostro Account)이라고 부른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치환거래은행이 많을 경우 보유의

국환을 이자가 없는 당좌계정에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므로 자금효율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따라서 각 외국환은행은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 국제금융중심지에 소재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국제적 거래량이 많고 대외신용도가 보장된 대형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 당방계정을 개설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했다(한국은행 1976: 12-13).

1960년대 당시 해외교포 및 파견기술자 대본국송금에서 3대 자금 출처는 서독, 일본, 월남이었다. 서독의 경우 파독광부 및 간호사가 발송하는 송금을 한국은행이 독일 드레스너 은행에 개설한 당방계정을 경유하여 본국으로 송금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을 통해서 재일교포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한국은행 1966). 그러나 당시 월남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당방계정을 개설한 예치환거래은행이 전무하였으므로, 월남과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 소재한 예치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자금정산을 해야만 했다.

전술된 예치환거래은행의 당방계정은 무부리성 당좌계정이다. 외국환거래 취급과 거래자금 청산을 위해 다수의 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당방계정에 거래유지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잔액을 남겨둘 경우, 무수익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예치환거래계약은 국제금융중심지에 소재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체결하여 당방계정을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지도하고 있었고, 월남소재 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당방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외화자금 운영 상 적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국기업의 진출 및 본국송금거래가 많거나, 교포사회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당해 국외지역 대상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는 것보다 직접 재외지점을 개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민상기 1991: 45). 따라서 파월기술자

파견뿐만 아니라 미군 군납용역·수출을 통한 대규모 외화획득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부입장에서는 현지에 외국환은행 재외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본국송금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Ⅲ.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과 활동

1.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설치와 한국외환은행 인계

(1) 한월경제각료회담과 한은 사이공지점 개점

1965년 11월, 응우옌 까오 끼(Nguyen Cao Ky) 월남 수상의 방한에 맞춰 한월수상회담이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한월개별각료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각료회의 역시 진행되었는데, 한국측 참가자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 박충훈 상공부장관, 원용석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이, 월남측 참가자로는 쩌엥 타이 툰(Truong Tai Ton) 경제재무상, 레 반 킴(Le Van Kim) 경제성조사기획국장, 호안 딘 룡(Huang Dinh Luong) 경제성투자과장이 경제각료회담에 참석했다(외무부 1965: 1).

당초 본 회담은 당초 끼 월남 수상의 방한에 따라 동석한 툰 경제재무상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 간 각료급 경제각료회담의 성격으로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이 각료회담에서 한월경제협력 및 상호무역증진에 관한 협의사항이 도출되었고, 매년 연례적으로 정기적인 경제각료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일 회담이 “제1차 한월경제각료회담”으로 확정되었다. 제1차 한월경제각료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이 합의되었다. ① 상호 경제관계를 보장·강화하기 위해 매년 1회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정부관

리의 상호방문을 촉진하며, 한월 민간분야 간 합작투자사업을 촉진한다. ② 무역진흥과 교역의 확대를 위하여 양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수입면장발급 및 우선적 대우, 서울에 월남무역대표 1명을 주재시킨다. ③ 기술협조를 강화하며 미국 원조자금에 의한 파월지원을 받는 사업에 한국인 기술자를 우선채용한다. ④ 월남후방지역 사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방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민간인 의료진을 파견한다. ⑤ 한국인에 의하여 획득될 가득액의 외화송금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남에 한국은행 지점을 설치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설치는 전적으로 뜯 경제재무상의 개인적인 호의적 고려의 결과였다. 당시 응우옌 호우 하잉(Nguyen Huu Hanh) 월남 국립은행 신임총재가 그 당시 수준 이상으로 외국은행이 월남에 진출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재무성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외국은행의 월남 진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외무부 1965: 12). 뜯 장관이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설치건은 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한월 양국정부 사이에 한국은행 월남지점 설치안이 합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개점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사이공지점설립위원회가 66년 초 지점업무 개시를 목적으로 동년 12월에 구성되었고, 이어 66년 1월 8일 한국은행은 월남 정부에 사이공지점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조선일보 1965/11/27, p.2; 1966/01/11, p.4).

그로부터 3일 후인 1월 11일, 사이공 경제성 회의실에서 제2차 한월경제각료회담이 개최되었다. 해당 회담에서는 보세창고 거래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세창고를 빈호아와 퀴논에 설치하며, 한월 항공협정 교섭을 개시하고, 철강재 수입과 관련하여 월남정부가 허가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중요한 점은 개설준비중인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을 동년 3월 1일부터 개설하여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월남정부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계획보다 한 달이 늦어진 4월 1일부로 개점하고 업무에 착수했다. 이는 사이공지점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66/02/17, p.2). 실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이공지점 개설에 대한 인가를 동년 3월 17일부로, 재무부에서는 3월 22일부로 외국환은행 개점허가서를 발부하였다(조선일보 1966/03/24, p.4; 한국은행 1982: 46).

이렇게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금융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금융기관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시기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한국은행이 당시 이미 설치한 일본, 홍콩, 서구 내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가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해외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자를 조달하고 한국이 국제금융망에 연결되기 위한 경로로서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사이공지점은 상업은행 업무 수행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현지금융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처음 해외에 지점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현지에 재외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과거부터 동남아시아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1966년 4월 1일부로 업무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당해 실질적인 외국환 업무실적은 상당히 저조했다(한국은행 1967: 190). 당초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주월 기술자 및 한국기업, 파월국군의 환전과 송금을 주요 업무목적으로 개설된 곳이었다. 그러나 월남국립은행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인가를 발부한 것은 8월 22일이였다(매일경제 1966/08/26, p.1). 영업을 개시한지 약 5개월이 되어서야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증이 나

오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외화소지 및 외화계정 개설이 허용되는 1967년 4월까지 월남 내 외국인 개인에 대한 외화소지 및 반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용역 회사에 고용된 파월기술자의 급여도 월남 내에서 지급되지 않고 제삼국인 홍콩에서 한국은행이나 BoA 홍콩지점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실제 파월기술자의 본국송금은 한국은행 홍콩지점의 실적으로 인식되어 보고되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218; 한국은행 1967: 190). 이렇게 개설된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67년 1월 30일, 정부가 출자하고 한국은행 외국부 및 재외지점이 수행하던 외국환업무를 전부 인계받은 한국외환은행이 출범함에 따라 동행으로 인계되어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으로 개편되었다.

(2) 1967년 한국외환은행 설립과 해외지점 인계

정부는 1960년대 초반부터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한국환금은행 설립안을 수립한다. 한국은행이 기존에 수행하던 외국환업무를 신설되는 국책은행에 전부 인계하여 본래의 중앙은행 임무에 전념하게 하고, 신설되는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을 통해 국내 외국환업무 시장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무역량 증가와 외국은행의 한국 내 지점설치에 따라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외국환업무 장악을 우려한 데에 따른다.

실제 1965년 5개 외국은행에서 재무부 측으로 한국지점 개설을 신청하였다.⁵⁾ 이들 외국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지속하여 독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외국환분야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

5) 미국 FNCB, CMB, 영국 차타드은행(Chartered Bank), 일본 도쿄은행(東京銀行), 미쓰비시은행(三菱銀行). 출처 : 재무부 1965.

이 높았고, 그렇다고 자본 규모가 작은 5대 시중은행에 즉시 갑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과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입장에서 외국환시장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 한국지점과 자주적 입장에서 대응경쟁이 가능한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정희 정권은 외국환전문은행인 한국환금은행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책은행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대외공신력을 통해 신설 한국환금은행의 대외신용을 보증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설립방안으로 재무부는 한국환금은행이 한국은행 외국부와 해외지점 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정부의 현물출자 형식으로 출자하며, 신설되는 외국환기금이 한일청산계정을 흡수하고 그 중 일부를 환금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계획했다.⁶⁾

1967년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기까지 한국은행은 도쿄, 오사카, 홍콩, 사이공에 재외지점을 개설하고 있었고, 약 724개의 외국 소재환거래은행과 전술한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자산은 한국외환은행으로 인계될 대상이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사이공지점 역시 한국외환은행 출범에 따라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으로 개편되었다.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당초 파월 한국 기술자의 외화수입을 한국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작품이었다. 따라서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이 한국외환은행으로 인계가 된 이후에도 사이공지점의 업무는 주월 한국인의 여수신거래, 파월장병과 주월한국사령부의 본국송금업무 및 월남진출 한국기업의 지급보증 등 상업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였다. 1967년 한국용역업자가 월남에서 진행되는 각종 입찰에서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을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거나(매일경제 1967/

6) 은행설립과정에서 환금은행이라는 명칭은 한국은행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외환은행으로 변경되었다.

02/07, p.3),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운영하는 월남보세창고업무에서 지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이공에서의 활동은 주월한국인의 경제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매일경제 1967/05/11, p.3).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외화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주월 한국기업이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편취한 외화의 무단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조선일보 1968/04/25, p7; 경향신문 1968/12/09, p.7). 이렇게 한국의 외화수입 중 무역외 수지부문을 극대화하고 본국으로 달러를 신속하게 발송했던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은 1975년 사이공합락에 따라 동년 4월 30일 주월한국대사관 철수와 함께 폐점되었고, 동년 8월 6일부로 청산되었다(한국외환은행 1980).

IV. 해외지점으로서 환은 사이공지점의 역할과 월남특수

1. 파월근로자 급여 본국송금과 해외취업자 본국송금 효율화 정책

무엇보다 당시 정부와 한국(외환)은행이 사이공지점을 개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송금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금융 중심지 소재 예치환거래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정에 예치할 필요가 없이 송금에 수반되어 은행에 예치되는 대규모 외화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공지점 개설 이전에는 월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월남 소재 외국환은행(취결은행)에서 한국은행 외국부로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발송하고, 취결은행은 취결은행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거래하는 예치환거래은행에 송금액만큼 한국은행 외국부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으로 송금대전결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지시한다. 이러한 송금 흐름은 한국에

서 사이공으로 송금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 성립한다.

월남국립은행 외환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외화소지 및 송금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1967년 8월부터 월남 내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계정 개설에 관한 규정이 개정·완화되면서 외국인 비거주자의 외화예치 및 송금이 자유로워졌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66: 82-87; 1968: 34). 이러한 규정변화는 파월근로자의 본국송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규정 개정전까지는 사실상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지급이 불가능하여 미국 용역회사에서 한국인 근로자 급여를 제3국인 홍콩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월남으로 향하는 과정 중 홍콩에서 한국은행 홍콩지점이나 BoA 홍콩지점에 거래성계좌를 개설하고, 고용주가 파월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면 두 은행에서 파월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본국 가족송금 비율대로 한국으로 송금하고 잔여액은 홍콩 내 근로자명의로 개설된 해당 계좌로 예치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파월인력송출 초창기부터 파월근로자를 선발한 RMK-BRJ사와 PA&E사에서 채택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218). 나머지 미국계 용역회사와 한국회사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본국직송방식을 택하였고, 가족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최인근 농업협동조합 환취급점포를 통해 송금대금을 지급하였다(한국외환은행 1971: 104).

홍콩에서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형태로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구조는 1969년 5월부터 보건사회부가 급여 본국 직접송금 및 강제저축제도를 골자로 하는 ‘해외취업자 송금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중단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의 역할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본국송금과 저축 실적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취업기간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송금실적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었기 때문이다(보건사회부 1969).

보건사회부가 해외취업자 송금효율화 방안을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해외취업자의 대 본국 송금을 규제하여 외화수입을 증대한다. 둘째, 송금액을 은행 정기적립금으로 최대한 흡수 후 내자동원에 활용하여 산업자본화를 꾀한다. 셋째, 송금특혜부여로 자발적 송금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해외취업자가 급여를 한국으로 직송 및 정기적립 가입을 조건으로 취업허가를 하는 해외취업자 개별규제 ②근로자 임금을 대본국송금 직송을 조건으로 근로자 모집·송출을 허가하는 한국인 고용 외국인업체에 대한 협조 ③ 해외송출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립 권장 ④ 기취업자·송금규제 불능자에 대한 본국 송금 유인 ⑤ 근로자송금의 정확한 파악 및 관계당국 통보, 송금취급 은행에서 각종 부금불입을 대행하는 송금체계 확립 등 해외송출인력의 본국송금을 최대한 본국으로 유인하여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본국에서 이와 같은 해외취업자의 외화수입을 제도적으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저축하도록 구속하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주월한국 대사관 및 환은 사이공지점에서도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표 2>는 당시 주월공관이 주관하여 월남 내 파월근로자 대상으로 본국송금을 권고하고 해당 지침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월공관은 1969년 6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파월근로자를 대상으로 월남에서 받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토록 권고하는 활동을 준비 및 진행하였고, 1969년 7월 1일부터는 급여본국송금자에 한하여 여권연장을 허가하였다. 주월공관에서 외무부 본부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69. 7. 14. 기준으로 환은 사이공지점 계좌개설신청서 1,500부가 배부되었고, 이 중 470명이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RMK-BRJ 및 PA&E 등 급여지급을 홍콩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착된 용역

회사를 대상으로는 급여지급 은행을 국내은행으로 변경하고 가족송금시 한국 직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 1969년 9월말 모든 용역회사가 급여지급을 환은 및 기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였고, 주월공관은 은행을 통해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여권연장 및 영사관련 민원 수리여부를 결정하였다(외무부 1969).

<표 2> 해외취업자 송금효율화 방안 실시에 따르는 주월공관 활동내역

일자	진행 내용 및 주요 참여자
69.6.18	주월공관 영사과 및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장 주도 관계실무자 회의
69.6.19-69.6.25	각 고용회사 및 지방 노무관 주관 주월대사 담화문 발표
69.6.19-69.6.25	각 고용회사 및 지방 노무관,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 주관 파월 근로자 대상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청서 배포
69.6.20-69.6.25	주월공관 공보관실, 주월한국군사령부 방송과 주관 주월대사 방송
69.6.18-69.6.25	1st Log. Command, PX, VPA, 각 고용회사로 본국송금 협조 공한 발송 및 관계기관 방문
69.7.1-69.7.20	각 지역별 담당 노무관 파월근로자 순회 방문
69.6.20-69.6.30	주월공관 영사과에서 여권연장 및 여권기재사항 변경절차 공지

출처 : 외무부 1969

2. 파월부대 운영비 송금처리와 그리고 해외근무수당 가족송금

(1) 부대운영비

비전투부대 중심으로 구성된 주월군사원조단이 파견된 1964년, 당시 국방부 내에서는 부대경비 및 해외근무수당 송금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관부서였던 국방부 재정국 이재과에서는 부대운영경비 및 해외근무수당 송금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월남은행으로 우편송금하는 방안으로 이재과에서는 이를 ‘정상 송금절차’라고 명명하였다. 이 절차를 따를 경우 지원국으로서 대외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월남 피에스타화로 환전할 때, 당시 시중환율인 1미국달러 당 130피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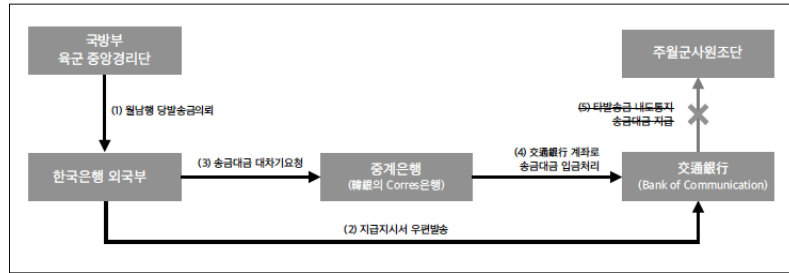
타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정환율 1미국달러 당 35피에스타화를 적용받아 손실이 막대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비정상적 송금절차’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제 3국이자 중간 경유지인 홍콩에서 달러를 수취하고, 재정담당관이 이를 월남으로 직접 지참하여 현지에서 시세환율로 환전을 하는 방안이었다. 홍콩은 이미 한국은행 홍콩지점이 개설되어 있었고, 미국달러 소지 및 거래가 자유로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였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이재과에서는 이 절차를 따를 경우 현지 암시장에서 환전을 시도하다가 현지 관헌에 적발될 경우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를 염려하였다.

마지막 방안은 ‘비정상적 절차에 준하는 송금절차’로, 외무부가 주월공관에 관공비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송금환을 발부받아 이를 월남 현지로 우송하는 방법이었다. 이 역시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에스타화로 환전 시 적발될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월남은행으로 직송하는 ‘정상 송금절차’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1964년 11월에 송금한 초회차 송금분이 월남 현지에서 다시 회송되는 사태가 벌어져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군 통제 아래서 군사력을 운영했던 한국군의 경험 미숙과 불충분한 준비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다(최용호 2006: 34).

우편을 이용한 지급지시서방식 해외송금구조에 의하면 국방부의 송금의뢰를 받은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월남 현지에 소재한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으로 지급지시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쌍방이 동시에 거래하는 환거래은행에 한국은행 당방계정에서 송금대금을 교통은행 당방계정으로 이체하고, 지급지시서를 받은 교통은행은 주월군사원조단 앞으로 송금이 내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조흥은행 1972: 16-21). 이에 주월군사원조단은 현지에 송금이 내도했다는

<그림 1> 우편송금방법에 따른 국방부발 주월군사원조단 송금과정



출처: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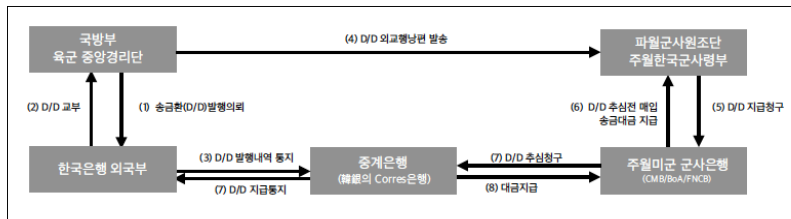
통지를 받고 경리장교가 교통은행에 내방하여 달러를 수령하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당시 월남 외국환규정에 의해 피에스타화로 지급만 가능할 뿐, 달러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던 것이다. 당시 월남정부는 개인당 500피에스타화 이상 환전 및 국외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지급은행인 교통은행은 파월부대라고 할지라도 송금받은 부대운영비와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을 주월군사원조단 경리장교에게 송금대금을 달러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주월군사원조단은 주월미군시설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파월장병들은 반드시 피에스타화가 아닌 미국달러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달러로 수령하지 못하는 수당송금분은 다시 암시장에서 미국달러로 환전해야 하므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지었다. <그림 1>은 전술한 1964년 12월 국방부와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우편송금법에 의해 파월군사원조단으로 송금을 보낼 때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경리장교는 12월 3일 월남에 도착한 송금을 다시 한국은행 외국부로 반환하는 송금퇴결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국방부 재정국과 전보를 통하여 현지사정에 맞게 주월미군 군사은행에 입점한 미국은행 3개 은행) 중 하나를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환을 이용한 송금절차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국방부 내부에서 경비송금 방법 논

의 중 부결되었다가 추후 채택된 송금환을 발부받아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식의 송금절차는 월남 현지에서는 정상적 방법이었다. 이미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던 주월 호주군, 필리핀군, 뉴질랜드군, 태국군 모두 본국에서 발송한 송금환을 미군 군사은행에서 추심·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월남주둔과 관련된 비용을 송금받아 파병에 필요한 경비를 본국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주월미군원조단 및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이와 같은 송금절차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약속 전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1964). 이에 따라 국방부는 외무부가 주월공관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송금환(Demand Draft)을 발부받아 외교행낭편으로 발송하고 현지 파월부대 경리장교는 수령한 송금환을 주월미군 군사은행에서 추심 후 자금을 미군 국고예치소에 예치하는 송금과정이 확립되었다.⁸⁾ <그림 2>는 전술한 송금환을 통한 부대운영비 및 해외근무수당 송금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송금환 기반 국방부발 주월한국군 경비송금 과정



출처: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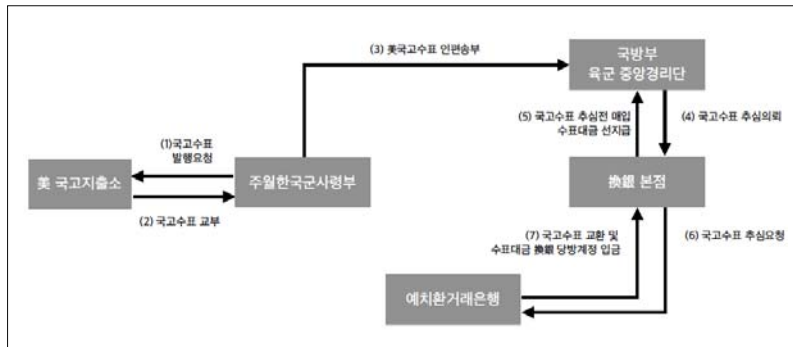
7) CMB, FNCB, BoA

8) 주월미군 군사은행은 BoA와 CMB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두 은행은 한국은행 외국부가 조선환금은행이던 시기부터 예치환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은행 외국부는 이 두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환을 발부하였고, 주월한국군 경리장교로부터 송금환을 수령한 주월미군 군사은행은 이를 은행 내 본지점계통으로 추심절차를 밟아 부대운영비 및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2) 정부의 외화확보 욕구와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송금

건설지원단 파병에 따른 브라운각서에 의해 주월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해외근무수당은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최용호 2006: 43-44). 1967년 기준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월 약 270만 달러 수준이었다. 당초 이 금액은 한국(외환)

<그림 3> 국고수표기반 주월한국군 본국송금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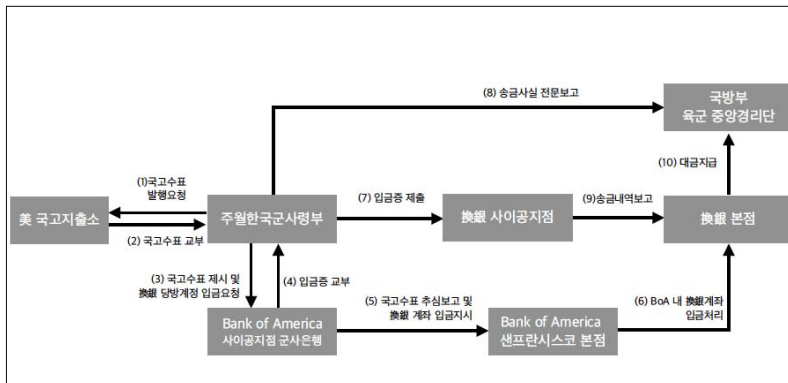
출처: 직접 작성

은행에서 BoA를 통해 월남 현지 주월한국군사령부로 송금하고 현지에서는 미군부대 내 미국고예치소에 예치되어 필요시마다 출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 내 가족에게 송금할 경우에는 매월 1회, 기타 송금의 경우 매주 1회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전 병력의 각종송금내역 및 관련서류를 집합하고, <그림 3>과 같이 부대운영경비 및 해외근무수당이 예치되어 있는 미국고예치소에서 송금액 총액을 미국고수표(US Treasury Check)로 교부받아 이를 육군중앙경리단으로 인편송부하면, 육군 중앙경리단은 이를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하여 체신부 저금관리국을 통해 전국 각 파월장병 가족에게 송금하였다.9)

9) 미국고수표는 지급처가 지급신용도가 확실한 미국정부라는 점에서 각 외국환은행은 이를 추심 전 매입하여 수표수취인에게 수표대금을 선지급하였다. 은행 간 관계에서

그러나 송금기간에 소요에 따라 변동되는 환율과 장표기반 지급 결제수단인 송금환의 망실사고 우려, 수표라는 송금환 고유의 특성에 따라 일람출급환 매입율이 적용되어 전신환율에 비해 낮은 수령액 문제 등의 사유로 미국고수표 직송방법은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 및 BoA 경유 송금으로 변화했다.¹⁰⁾ 기존에는 주월사 담당자인 관리부장이 미국 국고예치소에서 발부받은 국고수표를 육군중경단으로 직송하였다면, 1967년 5월부터는 <그림 4>와 같이 Funding Facility를 활용, 이를 주월미군 군사은행에 있는 BoA 사이공지점에 제시하여 BoA 샌프란시스코 본점에 개설되어있는 한국외환은행 본

<그림 4> 은행경유 국고수표 자금화를 통한 주월한국군 본국송금 과정



출처: 직접 작성

도 이러한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한국외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미국고수표를 매입하였을 경우, 외환은행 측은 이를 국내에 개설된 CMB 서울지점에 추심을 요청하는데, 이때 CMB 서울지점은 CMB 뉴욕본점에 해당수표의 자금화를 위해 한국외환은행 결제예치금계정으로 국고수표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전문을 타전한다. 당시에는 이를 Funding Facility라고 하였다 (한국외환은행 1971: 113).

- 10) 일람출급환 매입율은 현재 외화수표매입율로 고시되는 환율로, 전신환 매입율에서 우편기간 및 어음기간만큼 해당 외국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에 대한 이자성 금액인 환가료를 감한 환율이다. 일람출급환 매입율은 전신환 매입율보다는 낮고 외화현금매입율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한국외환은행 1971: 27; 이익중 외 2006: 38-39).

점의 당방계정으로 입금의뢰를 하고,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에서 입금영수증을 검토 후 한국외환은행 본점으로 이 사실을 타전하여 해외근무수당 가족송금 자금총액을 육군 중앙경리단에 지급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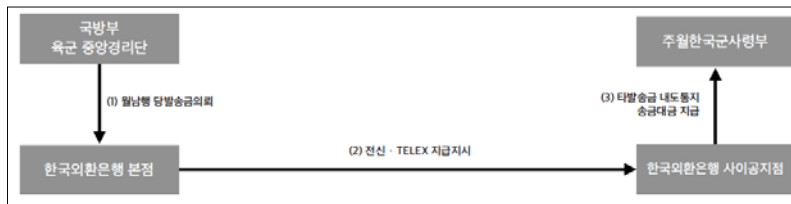
이후 정부보유외환 집중예치기관이었던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 10월 해당 송금자금을 한국외환은행 내부에 계속 잔류시켜 이 자금을 해외은행 정기에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주월군 해외근무수당을 한국외환은행에 예치시킬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주월한국군사령부 1968). 이러한 외환은행측 제의에는 한국외환은행이 정부출자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이고 정기에치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한국외환은행의 이자수익이 궁극적으로는 정부보유외환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 특히 한월간 오고가는 해외근무수당은 예치환거래은행 당방계정에 270만 달러라는 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외환은행 내부 본지점계정을 통한 대차기작업만으로 송금대진 결제청산이 완료되므로 외환보유고 증대를 희망하는 정부와 외화수신고 증대 및 외화이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외환은행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1968년부터는 미군 국고예치소에 예치되어있다가 소요시마다 미국 국고수표를 교부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던 것을 전면 개편하여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에 주월한국군사령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정에 해외근무수당을 예치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월군장병의 가족송금이 진행될 때마다 송금총액을 외환은행 본점 영업1부에 개설된 국방부 외화계정으로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5>와 같이 외환은행 본점 영업1부에 개설된 국방부 계좌와 외환은행 사이공지점에 개설된 주월사령부 계좌 사이에 자금이 오고갈 때 이전처럼 미 국고수표라는 송금수단과 주월미군 군사은행의 수표추심 및 증개는 사라졌고, 현재 해외송금에서 주로 채

택되고 있는 SWIFT 전신문의 원형인 텔렉스를 이용한 지급지시 전신문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 지급단계에서 월남 현지에서 공수한 송금신청서를 토대로 중앙경리단에서 장병 가족에게 체신관서를 통해 지급하는 과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금처럼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보유하고 있던 것도 아닐뿐더러 농어촌지역에는 내국환업무가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망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전국에 분포된 체신관서망과 이를 통해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우편환·우편대체를 이용한 급여지급은 당시로서 최선의 수단이었다.

<그림 5> 전신송금 기반 국방부발 주월한국군 경비송금 과정



출처: 직접 작성

V. 결론

1966년 설치된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은 한국 은행권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영미권진출보다 빠른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경제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일본과 아시아 무역·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에 이어 한국은행 재외지점이 설치된 곳이 국제금융 중심지가 아닌 사이공이었다는 것은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을 시사한다.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 조달이 급선무이던 1960년대, 냉전과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국가는 이를 외자 조달의 기회로 인식하고 해외 인력송출·해외파병을 단행했고, 이와 발맞춰 이뤄진 국책은행의 해외 진출은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에서 외화 조달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가가 개입하고 통할하였으며, 국가는 각종 제도와 신식 장비를 통해 외화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화 조달을 위한 국가주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환전문 국책은행 설립 역시 외화수급 최적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내 유일한 외국환은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었다. 1966년 당시 예정되어 있던 외국은행 한국지점 인가·설치가 진행될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 경쟁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았고, 일반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미약한 자본규모와 외국환업무 경험미숙으로 국내 외국환업무가 국가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이들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은행 외국부와 재외지점이 취급하던 외국환업무 물적·인적기반을 그대로 인계받고 정부출자를 통해 대외공신력을 부여받은 외국환전문 국책은행 설립이 추진·실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외환은행법이 제정되고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출범하게 되었다.

경제개발과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최우선이던 1960년대 중반, 그 당시에는 금융기반시설과 제도적 환경 역시 이에 맞춰 구축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교포 및 해외송출 노동자 등 재외국민이 밀집한 해외지역에 국책은행 재외지점을 설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신속하게 집중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였다.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은 달러확보가 시급했던 박정희 정부가 외화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확충한 금

용기반시설의 전형적 사례였다. 파월근로자의 급여 본국송금액이자 월남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누락되지 않고 한국으로 송금되도록 감독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무엇보다 매월 270만 달러에 달하는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월남특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외화수입원이었고, 정부와 한국외환은행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정부와 한국외환은행은 사이공 현지에 설치된 미국 국고예치소에 예치되어있다가 미국 국고수표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되는 동안 예치환거래은행에서 무부리로 묵여있는 이 해외근무수당을 한국외환은행 내에서 계속 계류시켜 고금리로 외화를 운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파월장병 가족송금을 위한 자금을 서류 공수에 걸리는 기간만큼 한국외환은행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장병들에게 배분하는 대신, 파월장병 전사·상자 원호를 빙자하여 비밀리에 착복·적립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외환은행 본·지점간 전신을 통한 송금구조 구현에 따라 외화조달환경 역시 확연히 개선되었고 해외송금 기법 역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즉, 우편을 통한 해외송금에서 전신을 통한 해외송금을 정착되었다는 금융기반시설 발전이라는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의 파월기술자·파월장병 송금은 단순히 196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고도성장기의 산업화자본반입과정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에서 송금수단의 변화와 그 활용방식에 관점을 맞춰 금융사적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게다가 한국외환은행은 국가가 통할하는 국책은행이었고, 외국환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정책에서 산업에만 국가적 동원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및 송금제도와 같은 지원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 다양한 정책적 보조와 자원투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결부하여 한국정부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자와 군인을 월남으로 송출하고 이들이 획득한 외화를 본국으로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금융체제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송금수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냉전의 시대상과 국제적 분쟁이 한국의 금융시스템 구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해외근무수당 송금을 통해 국방부와 한국외환은행이 월남전 당시 기밀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하였고 사용하였는지,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야합과 은폐된 착복에 대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혁은. 2016. “구술을 통해 본 베트남 특수:군인 해외근무수당을 둘러싼 오해와 베트남특수의 계급별 경험 차이”. 『인문과학연구』 22: 175-198.
- 김보현. 2019.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경제와 사회』 124: 328-356.
- 김수용. 1983. “해외인력진출의 경제적효과분석”. 『시장경제연구』 5: 39-56.
- 김정렬. 2006.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 대한무역진흥공사. 1966. 『월남의 근황』 서울:대한무역진흥공사.
- _____. 1968. 『월남시장』 서울:대한무역진흥공사.
- 민상기. 1991.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25(2): 13-63.
- 박진근. 2009.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백광기. 2004. “한국의 근대적 대기업 및 기업집단 형성사:정부개입(1960년대와 70년대)을 중심으로”. 『산학경영연구』 17: 27-52.
- 보건사회부. 1969. 해외취업자 송금 효율화 방안. 내부자료.
- 류상운. 2017.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사총』 92: 83-109.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한국의 해외취업: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 외무부. 1965. 第一次 韓·越 經濟閣僚會談 報告書. 내부자료.
- 외무부. 1969. 한·월남 경제협력, 1968-69. 내부자료.
- 윤충로. 2008.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派越)기

- 술자의 저항: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9: 93-128.
- 이익중,김일영,채병철,김동권,김동욱,백정선. 2006. 『은행텔러(하)』. 서울:한국금융연수원.
- 재무부. 1965. “外國銀行國內進出規制方案”. 내부자료.
- 조재호. 2011. “베트남 파병과 한국경제 성장”. 『사회과학연구』 50(1): 131-158.
- 조흥은행. 1972. 『외국환실무교본』. 서울:조흥은행.
- 주월한국군사령부. 1968. 해외근무수당 외환은행 예치운용. 내부자료.
- 주익중. 2017. “1960년대 초·중반 한국의 환율 개정”. 『경제사학』 41(2): 161-188.
- 최용호. 2006.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해외근무수당 연구”. 『군사』 58: 31-76.
- 채신부. 1970.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사』 서울:채신부.
- 한국금융연수원(편). 1989. 『換業務』 서울:한국금융연수원 교재출판부.
- 한국외환은행. 1971. 『실무교본2-1』 서울.
- _____. 1973. 『서독취업자를 위한 송금예금설명서』 서울:한국외환은행.
- _____. 1980. 당행 구 Saigon 지점의 계정에 관한 월맹으로부터의 정리요청. 내부자료.
- 한국은행. 1965.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통지 - 사이공지점 설치. 내부자료.
- _____. 1966.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실적 보고. 내부자료.
- _____. 1967. 1966년 연차보고서. 서울:한국은행.
- _____. 1976. 외국환은행 계정과목 및 기타 외국환업무 해설. 서

울:한국은행.

_____. 1982.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요람. 서울:한국은행.

_____. 2010. 『한국은행 60년사』. 서울:한국은행.

Embassy of Vietnam. 1971. “Commercial Banking System.” *Vietnam Bulletin* 6(9): 12-13.

Emery Robert F. 2020. *The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Vietnam*. Washington DC: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https://www.federalreserve.gov/pubs/rfd/1969/644/rfd644.pdf>)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1964. “Procedure for ROK to obtain US Dollar Currency in Vietnam”.

신문기사

경향신문. 1968. “外貨예금앞고 사용 유니버설 대표 구축” (12월 9일) (검색일자: 2021.11.15.)

조선일보. 1965. “韓銀 越南支店 設置준비 着手” (11월 27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6. “사이공支店設置 韓銀서 正式申請” (1월 11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6. “韓銀사이공支店長” (2월 17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6. “通貨安 定證券 5億원 放出” (3월 24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8. “30萬달러 逃避 對越用役社 越韓洋行서”. (4월 25일) (검색일자: 2021.11.15.)

매일경제. 1966. “外換業務認可” (8월 26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7. “入札保證金 積立을 免除 越南의 韓國業者들”. (2월

7일) (검색일자: 2021.11.15.)

_____. 1967. “6월부터取扱駐越保稅倉庫業務”. (5월 11일) (검색일자: 2021.11.15.)

(2022.09.29. 투고, 2022.10.16. 심사, 2022.11.22. 게재확정)

<Abstract>

The Flows of the Repatriation of Incomes and Vietnam War Booming: A Case Study of the Role of the Korea Exchange Bank Saigon Branch

Kyung Jin JEON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Korea Exchange Bank and its Saigon branch in controlling foreign currency income and remit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 flow structur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outh Vietnam in the 1960s. Deployment of the Korean combat troops to the Vietnam War provided foreign currencies essential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Park Chung Hee gained access to military supplies business in Vietnam as a reward for the military deployment. With this, Park expanded trade with Vietnam, increasing the foreign currency income and subsequently the capital for Sou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The Bank of Korea's Saigon Branch (handed over to the Korea Exchange Bank in early of 1967) was established in 1966 to support the Korean armed forces stationed and the Korean companies in Vietnam. Soon this state-run bank became an agent of Park's regime for maximizing the remittance from South Vietnam

through its control of the Korean Armed force's overseas service allowance and foreign currency incomes of the Korean companies and the Korean workers in Vietnam by tying them with working permit in South Vietnam.

Key Words: Vietnam war, Korea Exchange Bank, Overseas service allowance, Repatriation Remittance, Wire Transfer